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8 - 506호

의 안 명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의 투명성·공공성 제고 방안」

대 상 기 관 국 공 립 병 원 (47개)

의결연월일 2018. 12. 17.

주 문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의 투명성·공공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각 국·공립병원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2월 17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별지]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의 투명성·공공성 제고 방안

2018. 12.



국민권익위원회

|| 순 서 ||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제도 현황	2
III. 문제점	5
1. 시설사용료의 무분별한 감면은 공공성 훼손 소지 ...	5
2. 직원 감면을 과도 및 친인척 등 감면대상 과다	6
3. 임직원 소개 및 지인 감면은 부정청탁 소지 상존 ...	8
4.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 미흡	9
5.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및 기준 비공개	9
IV. 개선방안	11
1. 과도한 직원 감면율과 친인척 등 과도한 감면대상 축소 ...	11
2. 임직원 소개 및 지인 감면 폐지	11
3.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 확대	11
4. 감면기준 대외 공개	12
V. 조치사항	13

I. 추진배경 및 경과

- ❖ 추진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 국회('14. 10.) 국립대병원 감사에서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지적

□ 추진배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보건의료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공립병원을 운영
 - * 국립대학병원 11개,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국립의료기관 2개, 지방의료원 34개 등
- 국·공립병원은 장례식장을 대부분 직접 운영하며, 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 장례식장 시설(분향실, 접객실, 안치실 등)사용료를 감면
 - ※ 시설사용료는 사용면적 등 규모에 따라 18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이며, 감면율은 직원 본인의 경우 100~50%, 배우자·직계가족에 대해서는 50% 정도
 - 일부 장례식장은 직원 직계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본교 교직원, 유관기관 직원과 임직원 지인 등에게까지 감면 적용
 - ※ 충남대학교병원은 직원 및 직계가족 외 충남대학교 교직원과 그 가족, 졸업생까지 시설사용료를 감면하며, 청주의료원은 직원·배우자의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등에게 시설사용료를 감면
- 한편, 공공병원 장례식장임에도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다소 미흡
 - ※ 국공립병원 47개 중 23개 병원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규정 부재
- 친인척·퇴직자·지인 등의 감면이 과다하고, 공개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감면이 이뤄져 장례식장 운영의 공공성 훼손 소지가 있어, 감면제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국공립병원 실태조사 : ~ 10.28.
 - ※ 관련 규정 및 최근 2년 6개월간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현황 파악 등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11.12.
- 관계기관 협의 : ~ 11.23.

II. 기관 및 제도 현황

- (기관 현황) 국·공립병원은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법인으로,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구분되며, 47개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

※ 47개 병원 중 46개가 장례식장을 직영하고, 1개(부산대양산병원)는 위탁 운영

< 장례식장 운영 주요 국·공립병원 현황 >

구분	국립대학병원	국립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설치 근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등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관수	10개	3개	34개
소관 부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지부	복지부, 자치단체

- (감면 대상) 국·공립병원은 소속 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 등을 위해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를 감면

- 대다수 병원이 소속 직원·배우자,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감면제 운영, 일부 병원은 소속 직원의 형제·자매, 퇴직자, 본교 임직원도 감면
- 유관기관 공직자, 병원 임직원이 소개하는 경우와 임직원 지인인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하는 기관도 존재

- (감면 효율) 장례식장별로 소속 직원 및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의 100~50%, 퇴직자 등은 50~20% 감면

※ 감면액은 장례식장별 사용면적 등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100% 감면의 경우 장례 1회당 기준 180~50만원 정도

- 유관기관 공직자, 임직원 소개(지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30~10% 감면

- (감면 공개) 대다수 병원에서 장례식장 이용 감면 대상 및 효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고 운영

※ 일반적인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세부항목과 시간당 단가 등을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으나,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공개

참고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비용감면 현황

[참고1] 국립대학병원 등 장례식장 주요 감면대상 및 감면율 현황

(시설사용료 기준, 단위 : %)

연번	병원명	직원	배우자	존비속	형제 자매	퇴직직원, 배우자	본교 임직원	본교 동문	직원소개, 지인
1	강원대병원	50	50	50	50	20	20	20	
2	경북대병원	100	50	50					10
3	경상대병원	100	100	50	30				
4	부산대병원(양산) <위탁운영>								
5	서울대병원	100	50	50		50 (임원, 20년 근속자)			
6	전남대병원	100	100	50					
7	전북대병원	50	50	50		50 (정년, 명예)	30	30	
8	제주대병원	100	30	30		10 (정년,명예, 공로)	20		
9	충남대병원	100	100	100		50 (20년 근속자)	50	30	20
10	충북대병원	100	100	50					
11	한국원자력 의학원	100	100	50	50	100(30년 이상근속자) ~50 (희망퇴직, 20년근속)			10
12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100	50	50	50				10
13	국립중앙 의료원	100	50	50					

(자료: 국립대학병원 등 제출규정 분석)

[참고2] 지방의료원 장례식장 감면대상 및 감면율 현황

(시설사용료 기준, 단위 : %)

연번	병원명	직 원	배 우 자	존비속	형제·자매	퇴직직원, 배우자	직원소개, 지인
1	서울의료원	50	50	50			
2	부산의료원	50	50	50			30
3	대구의료원	30	30	30			10
4	인천의료원	20	20	20			
5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100	50	50			
6	경기의료원 의정부병원	100	50	50			
7	경기의료원 파주병원	100	50	50			
8	경기의료원 이천병원	100	50	50			
9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100	50	50			
10	경기의료원 포천병원	100	50	50			
11	강원원주의료원	50	50	50		있음	
12	강원강릉의료원	50	50	50			
13	강원속초의료원	20	20	20			
14	강원삼척의료원	50	50	50			
15	강원영월의료원	50	50	50			
16	충북청주의료원	100	50	50	20		10
17	충북충주의료원	50	50	50	30	30(정년퇴직)	30
18	충남천안의료원	50	50	50			
19	충남공주의료원	40	40	40	40		30
20	충남홍성의료원	50	50	50			
21	충남서산의료원	45	45	45			
22	전북군산의료원	30	30	30			
23	전북남원의료원	30	30	30			
24	진안군의료원	30	30	30			
25	전남순천의료원	50	50	20			20
26	전남강진의료원	30	30	30			10
27	전남목포의료원	50	50	50			10
28	경북포항의료원	100	50	50~30		10	
29	경북안동의료원	100	50	50~30		20	10
30	경북김천의료원	없음	없음	없음			
31	울진군의료원	50	50	30			
32	경남마산의료원	50	50	50~30	30		20
33	제주의료원	20	20	20			
34	서귀포의료원	100	30	30~20			

(자료: 지방의료원 제출규정 분석)

Ⅲ. 문제점

1 시설사용료의 무분별한 감면은 공공성 훼손 소지

- 국공립병원의 공적 기능에 비추어, 직영하는 장례식장의 경우도 공공성에 부합하는 운영이 필요

※ '14년, '16년 국정감사에서도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의 공공성을 강조

- 그러나,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공공성과 상관없이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해 특혜성 감면 규정 존재

※ 유관기관, 특히 상급기관에 대한 비용감면은 청탁금지법의 취지 훼손 소지 존재

※ 경북김천의료원은 도청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해 장례식장 이용료의 20% 감면규정이 있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유관기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15%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

< 직원 외 공직자 감면 관련 규정 사례 >

[경북 김천의료원 감면기준]

대상자	감면 현황	범위
○○도청 직원	장례식장 이용료의 20% (단, 장의차 10%)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미혼자녀

[한국원자력의학원 장례식장비 감면기준]

구분	감면 항목	감면대상 및 감면율	
		본인	직계가족
기관정책 기여자 (○○부 직원, ○○부 직원, ○○위원회 등)	빈소사용료, 시신안치료, 염습비	15%	15%
과학기술계 (과학기술계 소속 정부출연(연) 직원, 및 정부출연(연)의 출자법인	빈소사용료, 시신안치료, 염습비	15%	15%

2

직원 감면을 과도 및 친인척 등 감면대상 과다

- (직원 감면을 과도) 상당수 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설사용료 직원 감면율을 100%로 적용하여 지나친 혜택 부여

※ 47개 병원 중 20개 병원에서 직원 감면율을 100%로 정하고, 5개 병원에서는 배우자까지 100% 감면율을 적용

- (대상 범위 과다) 감면 대상이 너무 많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공직 사유화로 비춰질 소지

- (직원 친인척) 직계가족 외 형제·자매까지 50~20% 감면

※ 강원대병원·공주의료원 등 8개 병원에서는 직원의 형제·자매도 시설사용료 감면

- (퇴직자) 병원 퇴직자와 그 가족에게도 100~10% 감면

※ 충남대병원·충주의료원 등 10개 병원에서는 병원 퇴직자와 배우자 등에게 시설 사용료 감면

< 퇴직자 감면 관련 규정 사례 >

[충남대학교병원 감면기준: 감면항목은 분향실, 안치실 영결식장 사용료]

감면대상자: 병원 및 대학교 퇴직자	감면율
병원 정년퇴직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50%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50%
의과대학에서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교수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50%
의과대학의 정년퇴직교수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50%
충남대학교의 명예교수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30%
충남대학교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30%

- (대학직원 및 동문)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병원과 상관없는 대학교 임직원과 그 가족, 동문에게까지 50~20%를 감면하고 있음

※ 전북대병원 등 4개 대학병원에서는 대학교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감면을 하고, 강원대병원 등 3개 병원에서는 대학교 재학생에게까지 감면 시행

< 학교 직원 등 관련 감면규정 사례 >

[전북대학교병원 감면기준: 감면항목은 분향실, 안치실]

감면대상자	감면율
1. 전북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민법이 정하는 직계존비속 적용)	
가. 교직원(조교 및 기성회직, 명예교수 포함)	
1) 본인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자녀는 25세미만)	30%
나. 계약직(학군단 직원은 본인만 적용)	
1) 본인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자녀는 25세미만)	30%
다. 학생(대학원생 포함, 휴학생 제외)	
1) 재학생 본인만 적용	30%

[강원대학교병원 감면기준: 감면항목은 분향실, 안치실, 처치실 및 청소관리비]

감면대상자	감면율
2. 강원대학교	
가. 졸업생, 재학생, 교직원, 동문	
나. 가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부, 형제·자매, 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손주, 증손주, 외손주	20%

3 임직원 소개 및 지인 감면은 부정청탁 소지 상존

- 장례식장 이용자 유치 등을 이유로 임직원 소개 및 임직원 지인 등에 대한 감면을 하지만, 부정청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존재
- ※ 국공립병원 47개 중 경북대학교 병원, 부산의료원 등 14개 병원에서 직원 소개 (추천) 및 지인 감면제를 운영하며 시설사용료의 30~10%를 감면

< 직원소개 관련 감면규정 사례 >

[경북대학교병원 감면기준]

제7조(사용료 감면) 장례식장 사용료(사체안치료, 분향실료, 발인식장, 청소 및 쓰레기수거료) 감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본원 임·직원(계약 직원 포함) 추천자 : 10%

[부산의료원 감면기준]

대 상	감 면 율		
	빈소사용료	안치실사용료	입관실사용료
직원의 지인	30%	30%	30%

※ 직원 추천자(지인) 감면 자료 제출 13개 기관의 감면액 규모는 최근 2년 6개월 간 1,447백만원으로 해당기관 전체감면액의 48.2%에 이릅니다

< 최근('16.1.~'18.6.) 13개 장례식장 직원 소개(지인) 감면액 현황 >

구분	총 감면액	직원 소개 감면액	직원 소개 감면액 비율
금액	3,004백만원	1,447백만원	48.2%

- 국공립병원 진료비감면 관련 병원 지인 등에 대한 부당한 감면으로 감사에 지적된 사례도 있음
- ※ 경남지역 ○○의료원은 진료비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09.7.~'11.5월 지인, 직원의 부탁에 따라 원무팀장 등 직원들이 41건 5,458천원을 부당하게 감면하여 도 감사에서 지적됨
- 한편, 최근 지인과 관련된 병원 진료비감면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질의도 접수되고 있는 실정
- ※ (질의) 유선으로 지인 및 형제의 진료비 감면을 부탁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답변) 지인 및 형제의 진료비 감면을 부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15호의 부정청탁에 해당('17.5. 권익위 답변사례, 자료: 권익위 홈페이지)

4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 미흡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는 기관이 상당수 존재

※ 국공립병원 47개 중 절반에 가까운 23개 병원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 부재

- 최근 2년 6개월('16.1.~'18.6.) 간 47개 병원의 감면액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액은 전체의 21.3%에 불과

※ 국공립병원 전체 감면액은 8,141백만원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액은 1,738백만원

5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비공개

- 대다수 병원 장례식장에서 홈페이지에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을 비공개하는 등 불투명한 감면 운영

※ 47개 병원 장례식장 중 목포시의료원을 제외한 46개 장례식장에서 직원 및 직계 가족 등에 대한 전체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을 비공개

- 감면대상을 일부 공개하는 11개의 경우에도 직원이나 직계가족 등은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면기준만 공개

감면대상 전부 비공개 사례				감면대상 일부 공개 사례			
빈소 임대료	31명	500,000원 / 1일(20,833원/1시간)	접객실 사용요금 포함 금액임				
	41명	710,000원 / 1일(29,583원/1시간)		6호실	36,000원	247㎡ (75형)	
	45명	960,000원 / 1일(40,000원/1시간)		9호실	33,000원	204㎡ (62형)	
	68명	1,510,000원 / 1일(62,917원/1시간)		10호실	18,000원	104㎡ (32형)	
	150명	3,550,000원/1일(147,917원/1시간)					
염습실	450,000원/1회 (소마 200,000원/1회)		18:00~08:00 입관시에는 550,000원 자체입관시에는 300,000	구 분	요 금	비 고	
				안 치 료	2,500원/1시간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염 습 비 (입 관 비)	300,000원/1회	자가(유족) 또는 상조업체 염습 : 20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 100,000원 감면	
				영 결 식 장	50,000원/1회	50명 입실가능	

(자료: '18.11. 기준 각 장례식장 홈페이지 조사결과)

-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시설사용료 이용요금조차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고 운영 중

※ 47개 병원 중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등 14개 병원이 이용요금 홈페이지 미게재

이용요금 미게재 사례

이용요금 및 용품

Total 0건 1 페이지

번호

품목

규격

게시물이 없습니다.

장례식장안내

장례식장 소개

이용안내

빈소현황

이용절차

시신(사망자) → 안치 → 장례식장 이용절차 안내 → 분향소, 접객소 지정 → 장의용품 계약 → 입정 → 장의차량 예약 → 장의용품, 부대시설 사용료 납부 → 시신인수 → 발인

운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근무직원이 직접 장례식장 내의 안치실까지 운구합니다.

외부에서 사망한 경우

사고사인 경우는 먼저 응급실을 경유하여 사체검인을 받은 뒤 운구하여야 하며, 사고사가 아닌 경우는 받거나 외부에서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V. 개선방안

1 과도한 직원 감면율과 친인척 등 과도한 감면대상 축소

-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 가족에 대한 과도한 사용료 감면율 축소
 - (대상기관) 대학병원 장례식장 10개와 지방의료원 10개 등 직원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기관
- ※ 경북김천의료원은 직원 및 그 직계가족에 대한 감면제를 폐지했으며, 강원대병원 등 2개 대학병원은 감면율 50%, 지방의료원 23개도 감면율이 50% 이하임
-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과도한 감면대상 감소
 - (대상자) 형제·자매, 퇴직자, 대학병원 본교 직원 및 동문, 유관 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대상에서 삭제
- ※ 다만,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기부자 등에 대한 감면,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단체협약 할인은 유지

2 임직원 소개 및 지인 감면 폐지

- 부정청탁 유발소지가 있는 임직원 소개 및 지인 감면제 폐지
 - (대상기관) 지인감면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립병원 장례식장 4개와 지방의료원 10개 기관
- ※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16.9.)에서도 직원소개(지인)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는 폐지대상으로 하고 있음

3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 확대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규정 부재 기관은 규정을 마련, 감면율이 낮은 기관은 감면율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 사회적 배려대상자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무연고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해당자) 등

4 감면기준 대외 공개

○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 및 기준을 공개

- 직원·직계가족 등을 포함한 감면대상자, 감면대상 요금, 감면율 등 구체적 명시

※ 목포시의료원 장례식장은 모든 감면기준을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목포시의료원 장례식장 홈페이지 사용료 감면기준 공개 예시 >

장례식장 시설이용 요금

품명		규격		1일	시간당
안치료				50,000원	2,100원
빈소 및 접객실 사용료	1호실(55평)	92석	400,000원	17,000원	
	2호실(55평)	92석	400,000원	17,000원	
	3호실	12석	120,000원	5,000원	
	1+2호실(110평)	184석	600,000원	25,000원	

24시간 1일 산정(12시간 이상은 1일, 미만일 경우는 시간으로 산정 합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기준

구분		감면율	비고
1호	직원소개	10%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2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30%	
3호	직원 가족(직계 포함)	50%	
4호	행려사망자(무연고)	100%	시군구 등 별도 협의
5호	상조회사(협약체결시)	15%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시설사용료 이용요금을 게시

※ 이용요금 홈페이지 미게재 14개 기관 해당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조치사항

과제구분	세부과제	관련기관
과도한 직원 감면율과 친인척 등 과다한 감면대상 축소	○ 본인 및 배우자 등의 과도한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축소하는 방안 강구 - 감면율 100% 적용 대상 기관 20개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 충북청주의료원, 경북포항의료원, 경북안동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20개 병원
	○ 본인·직계 준비속 외 과다한 감면대상 범위 조정 - 형제자매, 퇴직자, 대학병원 본교 직원 및 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대상에 서 삭제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강원원주의료원, 충북청주의료원, 충북충주의료원, 충남공주의료원, 경북포항의료원, 경북안동의료원, 경북김천의료원, 경남마산의료원 등 16개 병원
임직원소개 및 지인 감면 폐지	○ 부정청탁 유발소지가 있는 임직원 소개 및 지인 감면제 폐지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충북청주의료원, 충북충주의료원, 충남공주의료원, 전남순천의료원, 전남강진의료원, 전남목포의료원, 경북안동의료원, 경남마산의료원 등 14개 병원
사회적 배려대 상자에 대한 감면 확대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규정 부재 기관은 규정을 마련, 감면율이 낮은 기관은 감면율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양산),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인천의료원,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 강원원주의료원, 강원강릉의료원, 강원속초의료원, 강원삼척의료원, 강원영월의료원, 충북청주의료원, 충북충주의료원, 충남천안의료원, 충남공주의료원, 충남홍성의료원, 충남서산의료원, 전북군산의료원, 전북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전남순천의료원,

과제구분	세부과제	관련기관
		전남강진의료원, 전남목포의료원, 경북포항의료원, 경북안동의료원, 경북김천의료원, 울진군의료원, 경남마산의료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47개 병원
감면기준 대외 공개	○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공개 -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감면 내용 포함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양산),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인천의료원,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 강원원주의료원, 강원강릉의료원, 강원속초의료원, 강원삼척의료원, 강원영월의료원, 충북청주의료원, 충북충주의료원, 충남천안의료원, 충남공주의료원, 충남홍성의료원, 충남서산의료원, 전북군산의료원, 전북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전남순천의료원, 전남강진의료원, 경북포항의료원, 경북안동의료원, 경북김천의료원, 울진군의료원, 경남마산의료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46개 병원
	○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시설사용료 이용요금을 게시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양산), 전남대병원, 강원강릉의료원, 강원영월의료원, 충북청주의료원, 충북충주의료원, 충남천안의료원, 전북진안의료원, 전남순천의료원, 전남강진의료원, 경북포항의료원, 경남마산의료원 등 14개 병원

☐ **관련규정: 각 병원장례식장 감면규정(지침)**

☐ **조치기한: 2019. 6.**

정 본 입 니 다.

2018. 12. 26

국 민 권 의 위 원 회



발급 : 혁신행정담당관실 한재현(044-200-7141)

